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입법 예고

1. 제안이유

방재 시설별 설계기준을 포괄하는 지역단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여 각 시설물의 성능이 통합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공공용지 사용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불량자에게 재난지원금이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재안전대책수립을 위한 대행자 선정 시 방재분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을 도입하여 방재분야 전문기술자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 하는 등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용어를 “방재관리대책수립 대행자”로 개정(안 제2조제13호)

1) 현행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는 이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모든 활동, 즉, “방재관리”에 관한 대책수립 업무 대행자이므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

2) 방재관리대책수립의 업무 활동범위를 계획·조사·설계·감리·점검·평가·자문 및 지도 등으로 구체화 함.

나. “방재성능목표”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15호)

다. 소방방재청장이 지역별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제1항)

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가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운영하도록 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제2항 및 제3항)

마. 기존 시설물에 대한 방재성능을 평가하고 통합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선하는 규정 신설(안 제16조의3)

바.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결과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실효성 확보하는 규정 신설(안 제19조 제5항)

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공공 토지 사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9조 제6항 및 제7항)

아.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대행자 실태 점검을 위한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안 제44조의2)

자. 대행자 및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대행자의 업무실적과 기술인력의 경력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마련(안 제44조의3)

차. 방재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절차 규정 마련(안 44조의 4)

카. 방재분야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조항 신설(안 제65조의2)

타. 재난지원금을 신용불량자의 동의를 받아 가족 등에게 지급하거나 신용불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제71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2. (생략)</p> <p>13.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안전대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료 조사 및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p> <p>14.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제정·운영) ① ~ ④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38조(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의 대행)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기초조사, 분석,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p> <p>3. 제37조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p> <p>4. 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평가</p> <p>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안전대책에 관한 업무</p> <p><신설></p>	<p>제2조(정의) -----.</p> <p>1. ~ 12. (현행과 같음)</p> <p>13. "방재관리대책수립 대행자"라 함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계획·조사·설계·감리·점검·평가·자문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p> <p>14. (현행과 같음)</p> <p>15. "방재성능목표"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설정·공표한 목표 강우량(시우량, 연속강우량)을 말한다.</p> <p>제16조의2(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 ① 소방방재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별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는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공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시의 군은 해당 군수가 설정·공표한다.</p>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가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재성능목표를 변경 설정·공표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라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의3(기존 시설물의 방재성능 평가 및 개선) ① 시·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은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맞도록 기존 시설물에 대한 방재성능을 평가하고, 통합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존 시설물의 방재성능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제정·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심지역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⑥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피해가 발생한 도심지역 또는 침수피해 위험이 높은 도심지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소유·관리하는 운동장·주차장·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지하공간에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토지에 대한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p> <p>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제38조(방재관리대책수립 업무의 대행) ① ----- -----방재관리대책수립 -----필요한 -----</p> <p>1. (현행과 같음)</p> <p>2.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p> <p>3.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p> <p>4.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및 기존 시설물의 방재성능 평가</p> <p>5.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의 적용</p> <p>6.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p>

현행	개정안
<p><신 설> <신 설> <신 설></p> <p><신 설> ②·③ (생략)</p> <p>제40조(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대행자는 제3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의 대행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2. 방재안전대책의 내용을 보존할 것 <p>3. 방재안전대책 업무 수행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p> <p>② 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업무를 한꺼번에 하도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제42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업무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 <p>5. (생략)</p> <p>6. 방재안전대책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재안전대책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p> <p>7. 등록 후 2년 이내에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p> <p>8. (생략)</p> <p>② (생략)</p> <p>제44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① 제42조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계약의 대행업무만을 계속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대행자로 본다.</p> <p><신 설></p> <p><신 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제37조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8. 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된 업무와 관련된 계획·조사·설계·감리·점검·평가·자문 및 지도 등의 업무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40조(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_____</p> <p>_____</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_____ 방재관리대책수립 업무 _____ 2. 방재관리대책 _____ 3. 방재관리대책 _____ <p>② _____</p> <p>방재관리대책수립 _____</p> <p>제42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_____</p> <p>_____</p> <p>_____</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4. _____ 방재관리대책수립 _____ 5. (현행과 같음) 6. 방재관리대책 _____ 방재관리대책 _____ 7. _____ 방재관리대책수립 _____ 방재관리대책수립 _____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p>제44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① _____</p> <p>_____ 방재관리대책수립</p> <p>② _____ 방재관리대책수립 _____</p> <p>제44조의2(대행자 실태점검) ① 소방방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재관리대책수립 대행 업무에 관한 대행자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등 대행자의 방재관리대책수립 실태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p> <p>② 소방방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행자 또는 방재관리대책수립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목적·주기·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4조의3(대행자 정보체계의 구축) ① 소방방재청장은 대행자 및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 인력에 관한 현황·자료 등의 대행자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제38조제1항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신 설></p> <p>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① ~ ③ (생략)</p> <p>④ 소방방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료부터 징수할 수 있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대행자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의한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 현황에 관한 사항 2.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수주(受注) 실적에 관한 사항 3.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입찰정보에 관한 사항 4.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현황 및 경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④ 소방방재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⑤ 소방방재청장은 대행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4조의4(방재관리대책수립 업무 수행자가 시행하는 용역사업) ① 제38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동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업무를 대행자로 하여금 용역사업을 하게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의 시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대행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야 한다.</p> <p>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대상자 중에서 특수한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재해관련 기술인에 대한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⑤ 소방방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료부터 징수할 수 있다.</p> <p>제65조의2(방재분야 전문인력의 육성)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방재분야 전문기술자(이하 "방재사"라 한다.)에 관한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방재사는 보유한 기술능력의 지속적인 유지·향상을 위해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5조의3(방재사의 신고) ① 방재사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 및 경력·학력·자격 등(이하 "근무경력 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38조에 따라 대행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그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 인력에 해당하는 방재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방재사의 근</p>

현행	개정안
<p><신 설></p> <p>제71조(압류의 금지)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지급된 구호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p> <p><신 설></p> <p><신 설></p> <p>제7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6. (생략)</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② (생략)</p>	<p>무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방재사 근무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방재전문경력증"이라 한다)를 신청한 경우에는 방재전문경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신고한 방재사가 소속중이거나 소속되었던 대행자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⑤ 방재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재사의 신고 및 방재기술경력증의 발급·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p> <p>제65조의4(방재사의 명의 대여 금지 등) ① 방재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방재전문활동을 하게 하거나 방재전문경력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p> <p>② 방재사가 아닌 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방재관리대책수립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방재전문경력증을 빌려서는 안된다.</p> <p>제71조(압류의 금지) ① 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구호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과 구호금의 지급이 금융회사 등의 예금통장이 압류되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가족 등에게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p> <p>제77조의2(벌칙) 제65조의4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79조(과태료) ① _____</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태점검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p> <p>8. 제65조의3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대행자</p> <p>9. 제6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p> <p>② (현행과 같음)</p>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時우량, 연속강우량) 기준

(단위 : mm)

no.	자치단체명	단기계획('15년)			중기계획('30년)			장기계획('60년)		
		1시간	2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1	서울특별시	95	135	170	105	155	190	120	180	220
2	부산광역시	85	125	150	95	135	160	115	160	190
3	부산광역시 기장군	80	120	140	90	135	155	100	155	180
4	대구광역시	60	85	100	65	90	105	75	100	120
5	대구광역시 달성군	60	85	100	65	95	115	75	110	120
6	인천광역시	75	115	135	85	135	155	100	145	170
7	인천광역시 강화군	95	140	180	110	160	205	125	180	235
8	인천광역시 옹진군	85	125	150	95	140	175	105	160	195
9	광주광역시	65	100	115	75	110	130	90	130	155
10	대전광역시	75	115	140	80	125	150	85	140	165
11	울산광역시	65	100	120	75	120	140	85	130	155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65	100	120	75	110	135	85	125	150
13	경기도 수원시	75	115	140	85	120	150	95	145	180
14	경기도 성남시	80	115	145	90	130	160	100	150	180
15	경기도 고양시	85	125	160	95	140	180	110	160	200
16	경기도 부천시	85	120	150	95	135	170	105	155	190
17	경기도 안양시	80	115	145	90	130	160	100	145	180
18	경기도 안산시	75	110	135	85	125	150	95	140	185
19	경기도 용인시	75	105	125	85	120	140	95	135	155
20	경기도 의정부시	85	125	160	95	140	175	110	160	200
21	경기도 남양주시	80	120	150	90	135	165	105	155	190
22	경기도 평택시	75	105	130	85	120	145	95	135	165
23	경기도 광명시	85	125	155	95	140	175	110	160	200
24	경기도 시흥시	75	110	135	85	125	150	95	140	180
25	경기도 군포시	75	110	140	85	125	155	95	140	180
26	경기도 화성시	80	110	140	90	125	155	100	140	180
27	경기도 파주시	90	130	165	100	145	180	115	165	210
28	경기도 이천시	70	95	110	80	110	120	90	120	130
29	경기도 구리시	85	125	160	95	140	180	110	160	200
30	경기도 김포시	95	140	180	105	155	195	120	180	225
31	경기도 포천시	70	105	135	80	115	150	90	130	170
32	경기도 광주시	75	105	125	85	120	140	95	140	160
33	경기도 안성시	70	100	120	80	110	130	90	125	145
34	경기도 하남시	85	120	150	95	140	170	110	155	195
35	경기도 의왕시	80	110	140	90	125	155	100	140	180
36	경기도 양주시	85	125	160	95	140	180	110	160	200
37	경기도 오산시	75	110	140	85	125	155	95	140	180
38	경기도 여주군	70	100	115	80	110	125	90	125	145
39	경기도 양평군	75	110	130	85	125	150	100	140	170

(단위 : mm)

no.	자치단체명	단기계획('15년)			중기계획('30년)			장기계획('60년)		
		1시간	2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40	경기도 동두천시	80	115	150	90	130	165	100	145	185
41	경기도 과천시	80	120	150	90	135	170	105	155	190
42	경기도 가평군	65	95	115	75	105	125	85	115	140
43	경기도 연천군	70	100	130	80	110	145	90	125	160
44	강원도 춘천시	55	85	100	60	90	105	70	105	125
45	강원도 원주시	75	100	120	85	110	130	95	125	150
46	강원도 강릉시	60	105	130	70	110	140	85	135	170
47	강원도 동해시	65	100	125	75	110	140	85	120	160
48	강원도 태백시	60	90	110	70	100	120	80	115	140
49	강원도 속초시	55	85	110	65	100	120	75	110	140
50	강원도 삼척시	60	85	105	70	100	120	80	110	135
51	강원도 홍천군	65	90	110	75	100	120	85	115	140
52	강원도 횡성군	70	95	115	80	110	130	90	125	145
53	강원도 영월군	65	100	120	75	110	135	85	125	150
54	강원도 평창군	60	90	120	65	100	130	75	115	150
55	강원도 정선군	55	85	110	65	100	120	75	110	140
56	강원도 철원군	65	100	130	75	110	145	85	125	160
57	강원도 화천군	60	90	110	65	100	120	75	110	140
58	강원도 양구군	55	80	100	65	90	110	75	105	125
59	강원도 인제군	55	80	100	65	90	115	75	105	130
60	강원도 고성군	55	85	110	65	95	120	75	110	140
61	강원도 양양군	55	90	115	65	100	125	75	110	140
62	충청북도 청주시	70	95	110	75	105	125	85	120	145
63	충청북도 충주시	60	90	105	70	100	120	85	120	145
64	충청북도 제천시	70	100	120	75	110	135	85	125	150
65	충청북도 청원군	70	100	120	75	110	130	85	125	150
66	충청북도 보은군	70	105	125	80	120	135	95	140	160
67	충청북도 옥천군	70	100	120	80	115	135	90	130	150
68	충청북도 영동군	55	80	90	60	85	100	70	100	110
69	충청북도 증평군	70	95	115	75	105	125	85	120	145
70	충청북도 진천군	70	95	120	75	110	130	85	120	145
71	충청북도 괴산군	65	95	110	75	105	120	85	120	140
72	충청북도 음성군	65	95	110	75	105	120	85	120	140
73	충청북도 단양군	65	90	110	70	100	120	80	115	140
74	충청남도 천안시	70	100	120	80	110	135	90	130	150
75	충청남도 공주시	75	105	130	80	120	140	95	135	160
76	충청남도 보령시	75	115	145	85	130	155	100	150	180
77	충청남도 아산시	70	100	120	80	110	135	90	130	150
78	충청남도 서산시	65	90	110	75	105	120	85	120	135
79	충청남도 논산시	75	105	125	85	120	135	100	140	155
80	충청남도 계룡시	75	105	130	80	120	145	90	130	160
81	충청남도 금산군	65	95	110	70	105	120	85	120	135
82	충청남도 연기군	70	100	120	80	110	135	90	125	150
83	충청남도 부여군	80	110	130	90	125	145	105	150	165

(단위 : mm)

no.	자치단체명	단기계획('15년)			중기계획('30년)			장기계획('60년)		
		1시간	2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84	충청남도 서천군	65	95	115	70	105	125	80	120	150
85	충청남도 청양군	80	110	130	90	130	145	105	150	170
86	충청남도 홍성군	70	100	120	80	115	135	90	135	150
87	충청남도 예산군	70	95	120	80	110	130	90	125	150
88	충청남도 태안군	70	95	115	80	110	125	90	125	145
89	충청남도 당진군	65	90	110	75	105	120	85	120	140
90	전라북도 전주시	75	100	115	85	115	135	95	130	150
91	전라북도 군산시	65	90	115	70	100	125	80	110	145
92	전라북도 익산시	70	100	120	80	115	135	90	130	150
93	전라북도 정읍시	70	105	115	80	120	125	95	140	145
94	전라북도 남원시	65	90	100	70	95	110	85	110	130
95	전라북도 김제시	70	100	120	80	115	135	90	130	150
96	전라북도 완주군	70	100	120	80	110	130	90	130	145
97	전라북도 진안군	65	90	100	70	100	115	80	110	125
98	전라북도 무주군	60	90	105	70	100	115	80	115	125
99	전라북도 장수군	60	80	90	65	90	100	75	100	110
100	전라북도 임실군	60	85	105	70	95	115	80	110	130
101	전라북도 순창군	70	95	110	80	105	120	90	125	135
102	전라북도 고창군	70	105	120	80	120	130	95	140	150
103	전라북도 부안군	70	100	120	80	115	135	90	130	150
104	전라남도 목포시	55	80	95	60	85	100	70	105	120
105	전라남도 여수시	70	95	120	80	110	135	95	130	160
106	전라남도 순천시	85	125	145	95	145	160	115	170	180
107	전라남도 나주시	70	100	120	75	110	130	85	125	150
108	전라남도 광양시	75	115	140	85	130	155	100	150	180
109	전라남도 담양군	70	105	120	80	115	130	90	130	150
110	전라남도 곡성군	75	115	130	85	130	145	105	150	165
111	전라남도 구례군	65	90	100	75	100	115	85	110	130
112	전라남도 고흥군	90	130	160	100	150	180	115	180	210
113	전라남도 보성군	80	125	150	90	140	170	105	160	190
114	전라남도 화순군	80	115	135	90	135	150	105	155	175
115	전라남도 장흥군	75	110	145	85	125	150	95	140	170
116	전라남도 강진군	70	105	130	80	120	145	90	135	160
117	전라남도 해남군	70	100	120	75	110	130	85	125	150
118	전라남도 영암군	65	95	115	70	105	125	80	120	140
119	전라남도 무안군	55	85	100	60	90	105	70	105	120
120	전라남도 함평군	65	95	110	70	105	120	80	120	140
121	전라남도 영광군	70	100	115	80	110	125	90	125	145
122	전라남도 장성군	70	100	120	80	115	130	90	130	150
123	전라남도 완도군	75	115	150	85	130	165	100	150	190
124	전라남도 진도군	70	100	120	75	110	130	85	125	150
125	전라남도 신안군	55	85	100	65	90	105	75	105	120
126	경상북도 포항시	60	85	100	70	95	115	80	110	130
127	경상북도 경주시	60	85	100	70	100	115	80	110	130

(단위 : mm)

no.	자치단체명	단기계획('15년)			중기계획('30년)			장기계획('60년)		
		1시간	2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128	경상북도 김천시	55	70	85	60	80	90	70	90	105
129	경상북도 안동시	50	65	75	55	70	80	65	80	90
130	경상북도 구미시	55	65	70	60	75	85	65	85	95
131	경상북도 영주시	60	85	100	70	95	115	75	105	130
132	경상북도 영천시	55	70	80	60	80	90	70	95	100
133	경상북도 상주시	60	80	90	65	90	100	70	100	115
134	경상북도 문경시	55	70	90	60	80	95	70	95	105
135	경상북도 경산시	55	80	90	60	90	95	70	100	110
136	경상북도 군위군	55	70	75	60	80	90	70	95	105
137	경상북도 의성군	55	70	85	60	80	90	65	90	105
138	경상북도 청송군	55	75	85	60	80	90	70	95	105
139	경상북도 영양군	55	80	95	65	90	105	75	100	120
140	경상북도 영덕군	55	75	90	60	85	95	70	100	110
141	경상북도 청도군	65	95	105	75	110	120	85	125	135
142	경상북도 고령군	70	100	115	75	110	125	85	130	145
143	경상북도 성주군	60	80	90	65	90	105	70	100	110
144	경상북도 칠곡군	55	75	85	60	85	90	70	95	105
145	경상북도 예천군	55	75	90	60	85	100	70	100	115
146	경상북도 봉화군	70	90	120	75	100	135	85	110	150
147	경상북도 울진군	50	70	85	55	80	90	65	90	100
148	경상북도 울릉군	60	80	95	70	95	110	80	110	120
149-1	경상남도 창원시	80	120	145	90	130	155	105	150	180
149-2	경상남도 마산시	80	125	140	90	140	160	105	160	185
150	경상남도 진주시	70	105	130	80	120	140	90	135	160
151	경상남도 통영시	75	110	125	85	125	135	100	150	160
152	경상남도 사천시	75	110	135	85	120	150	95	140	170
153	경상남도 김해시	80	115	135	90	135	150	105	155	175
154	경상남도 밀양시	70	100	115	80	115	130	95	135	150
155	경상남도 거제시	80	120	150	90	140	160	105	160	180
156	경상남도 양산시	70	105	125	80	120	140	95	140	160
157	경상남도 의령군	70	105	125	80	120	140	90	135	155
158	경상남도 함안군	80	120	140	95	130	155	105	150	180
159	경상남도 창녕군	70	100	120	80	115	130	95	135	150
160	경상남도 고성군	75	110	130	85	125	145	100	145	165
161	경상남도 남해군	80	120	160	90	140	170	100	155	195
162	경상남도 하동군	75	120	150	85	130	160	100	150	180
163	경상남도 산청군	75	115	145	85	130	165	100	150	190
164	경상남도 함양군	70	100	120	75	110	130	85	125	150
165	경상남도 거창군	60	90	100	70	100	110	80	120	125
166	경상남도 합천군	70	100	120	80	115	130	90	130	150
167	제주도 제주시	80	115	135	90	130	150	100	150	175
168	제주도 서귀포시	80	115	135	90	130	150	105	150	170

방재·법령정보

지역특성

안전정보

행위요령